

어 특수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뇌물과 청탁을 일삼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
치입니다.

게다가 기업인들이 정치인과 공무원, 권력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거의 모두가 음성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검은 돈이므로 세무당국에서 통보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이고, 한 기업의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기업의 돈을
마치 개인의 돈인 양, 수천만원, 심지어는 수억원의 돈을 청탁의 대가로,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제
공하는 행위는 자신의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검은 돈을 받은 자만 처벌하고 그 제공자를 불문에 붙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며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발인들은 김현철씨와 관련하여 수사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횡령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
며, 돈을 준 피고발인들은 분명히 이윤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처벌없이 정경
유착과 뇌물수수의 관행이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한보비리와
같은 정경유착의 병폐가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
에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2. 범죄사실

- (1) 피고발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은 1993년 12월부터 1995년 12월 사이에 서초케이블TV 사업
자로 선정되도록 공보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전후 26회에 걸쳐 합
계금 17억 2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김현철에게 제공하고,
- (2) 피고발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은 1993년 5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6천만원씩 20회에 걸쳐 12
억원, 1995년 4월에 신한중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 피고발인의 장인인 [REDACTED] 과의
소송에서 이길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억원 합계금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김현
철에게 제공하고,
- (3) 피고발인 최승진 우성그룹 전 부회장은 1993년 4월부터 1993년 10월 사이에 3회에 걸쳐 6천만
원씩 합계금 1억8천만원을,
- (4) 피고발인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은 1993년 6월부터 1995년 11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6천만원씩
합계금 6억원을,
- (5) 피고발인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은 1994년 6월부터 1996년 12월 사이에 31회에 걸쳐 5천만원씩
합계금 15억5천만원을,
- (6) 피고발인 광인환 대동주택 회장은 95년 6월에 합계금 10억원을 지자체 선거활동비 등 활동비로
제공하여서 각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1억8천만~17억2천만원까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김현철씨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자금의 조성경위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등의 의결절차, 경과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인 회사기구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의 지
급을 용인하는 의결을 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부정한 자금의 조성은 통상적인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겠지만 회사의 각종 자금에서 빠져나왔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회사에 유보되어야 할 정당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3. 결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대통령의 아들까지 망라된 이번 권력형 비리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업가에서부터 청와대에까지 짙은 불신의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발인들의 횡령죄에 대해서도 마땅히 엄정하고도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발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계좌이동과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 거래된 모든 내역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대선자금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속 기소된 김현철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를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번 고발전에 대한 검찰의 처리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1997. 5. 23.

위 고발인 김 형 완 (인)

이 태 호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